# 사례로 보는 초과근무 수당

# - 목 차 -

I. 기본 내용	~p5
Ⅱ. 질의 회시 내용	
1.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병급 여부 p6	~p14
2. 초과근무의 명령 및 확인	~p18
3. 학교 출석수업과 출장 및 초과근무 p19	~p20
4. 방학중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p21	~p26
5. 주 5일제 근무와 초과근무수당 p27	7∼p28
6. 교원연수와 초과근무 수당	)∼p31
7. 비정규직관련 초과근무수당	. p32
8. 기타	p33

# I. 기본 내용

### 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 가. 인정범위

### (1) 일반대상자

- 현업대상자 이외에 일반적인 출·퇴근시간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복 무규정」제9조의 근무시간이 적용되는 공무원)
- 초과근무수당중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
- - 지급시간
   : 1일 4시간, 월 67시간이내에서 인정하되,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속장관이 10할 내지 15할의 범위 안에서 할증률을 조정하는 경우 할증률별로 최대 인정
   - 지급시간

   급시간수의 계산
   - 지급시간
  - < 평일 및 정규 토요근무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
    - · 1일 2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2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 \* 월간 시간외근무시간 계산시 분단위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
    - · 1시간이상 조기출근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 간과 합산하여 2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한다.

### < 휴일근무 >

- 1일 2시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 2시간미만 :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2시간이상 4시간미만 : 공제없이 매분 단위까지 인정
  - 4시간이상 : 4시간만 인정
- ※ 휴무토요일 근무자(토요민원상황실 근무요원 포함)의 시간외근무
- · 주5일근무제 관련 휴무토요일 근무자(토요민원상황실 근무요원 포함)의 시간외 근무시간은 휴일근무에 준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한다.
  - (예) 1일 2시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 \*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식목일 (4월 5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ㅇ 1일단위 계산
  - 평일 및 토요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전·이후 시간외 근무
    - (예) 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10분 일찍(07시 50분) 출근하고 정규 근무시간보다 2시간 40분 늦게(20시 40분) 퇴근한 경우
      - (1시간 10분 + 2시간 40분) 2시간 = 1시간 50분
  - 평일 및 토요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
    - (예) 1일 정규퇴근시간이후 시간외근무시간이 3시간 50분인 경우 · 3시간 50분 - 2시간 = 1시간 50분
- ㅇ 휴일근무
  - (예) 휴일에 근무명령에 따라 출근하여 6시간 30분을 근무한 경우·2시간이상 근무시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므로 4시간 인정
- ㅇ 월단위 계산
  - 매일단위 시간외근무시간을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되, 1시간미만은 절사 (예) 시간외근무시간이 1개월간 각각 3시간 45분, 4시간 30분, 2시간 38분인 경우
    - · (1시간 45분 + 2시간 30분 + 38분) = 4시간 53분 ⇒ 4시간
      - \* 시간외근무시간에서 각각 기본 2시간을 공제한 후 합산

### (2) 현업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국가공무원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 시간외근무수당 인정범위
  - 월 지급시간 : 예산의 범위내
  - 지급시간수의 계산
    - · 1일 1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로 하되, 근무시간은 매시간 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며, 1시간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일정기간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 한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 \*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 \*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휴식시간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 \*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4조에 의한 휴가기간 및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

1항제4호에 의한 교육기간을 제외한다.

# 2. 야간근무수당(영 제16조)

### 다. 인정범위

- 야간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야간(22:00~06:00까지)에 정규근무시간으로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실제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3. 휴일근무수당(영 제17조) 및 관리업무수당(영 제17조의2)
- 5. 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제외대상자
  - 가.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 일반대상자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및 외출 등을 제외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이상인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5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되, 실제 출근 근무일수가 월 15일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 일반대상자의 경우 육아시간을 1시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분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현업대상자의 경우도 실제총근무시간에 육아시간 1시간을 포함한다.
      - \*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지 급분을 지급한다.
      - \* 방학기간중 출장명령에 따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출장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WII. 2. 바. (1)'의 출장시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에 따른다.

# 예시

- '04.12.17.일에 방학을 한 학교의 교원(교장은 제외)에 대하여 '04.12월분의 시간 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04.12월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실제 출근근무일수가 14일이므로 월 15일미만 인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실제 출근근무일수를 기준으로 매 1일에 대하여 1시 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
-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을 포함하여 1인당 월 수령액이 67시간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장관이 10할 내지 15할의 범위 안에

서 할증률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VI.1.다.(1)의 시간을 따른다.

### 나. 지급제외 대상자

-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예) 보충수업지도 교원, 시험감시 근무자 등
-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 공무원
-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1개월이상)파견공무원
- 자연보호 행사, 농촌일손돕기 행사, 국경일 및 각종기념일 행사의 지원으로 인한 초과근 무자, <u>을지연습 기간 중의 초과근무자</u> 및 비상소집 등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군인 및 행사나 훈련을 주관하는 담당자는 지급대상에 포함)

### 6.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 가. 초과근무의 명령권자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장 또는 4급이상 보조(좌)기관으로 한다.
  - 기관장이 4급이상인 독립관서중 경찰관서와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30명이상인 기관은 직근 하위직급의 보조(좌)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

### 나. 초과근무의 명령

-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초과근무의 명령은 공무원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초과 근 무명령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행사주관 등으로 소속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게 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간·부서 및 담당자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초과근무를 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관련 주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명령권자보다 상위직급의 기관 장 또는 보조(좌)기관(기관장이 4급이하인 독립관서는 기관장, 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이 정하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

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 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 다. 초과근무의 확인

- 복무관련 주관부서는 초과근무명령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초과근무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는 매일의 초과근무 명령 현황을 마감하여야 하다.
-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초과근무개시 전까지(사후결재의 경우에는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복무관련 주관부서에 비치된 초과근무명령대장에 명령받은 내역을 기재하여 야 하며,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초과 근무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위 "나"항의 일괄적인 명령에 의한 초과근무의 경우에도 초과근무명령 사항을 해당 근무일의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를 한 자는 근무종료 후(조기출근시에는 출근시) 출입구나 당직실에 비치된 초과근무확인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자필 기재하고, 당직근무자는 매일의 초과근무확인대장을 마감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 \* 재택당직 등으로 초과근무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무관련 주관부서에서 현황을 마감하여야 한다.

### 라. 교대근무의 경우

○ 위 '가', '나', '다'의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절차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별 도로 정하여진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방법에 따를 수 있다.

#### 마.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 초과근무명령권자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근거 자료로서 과단위로 매월(1개월 단위) 개인별 초과근무내역을 작성하여 초과근무명령서와 함께 다음달 5일(12월은 31일 이 전)까지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 월중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 전 소속기관은 발령받은 기관에 복무상황 통보시 전 소속기관에서 지급하지 아니한 초과근무내역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Ⅱ. 질의 회시 내용

# 1.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병급 여부

### 【 핵심내용 】

국내 출장중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단 출장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발생이 예상되는자로서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의 절자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수당 지급 가능

(객관적인 증빙자료 :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설명자료 등)

# 방학중 운동부 지도 교사의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지급

# 질 의 [61353, 2005.12.21]

- J고교에서는 동계휴가 중에 지정종목에 대한 동계훈련계획에 의해 같은 종목의 운동을 하고 있는 중,고등부 5개교가 합동으로 학교가 소재한 지역이 아닌 도시지역(학교가 소재한 지역에는 수영은 꼭 해야만 하는 필수 운동 종목임에도 수영장이 없는 등 기타 체육시설이 열악한 형편에서 타 지역에서 훈련)에서 합숙을 하며 동계훈련을 하고 있으며, 지도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합숙(24시간)을 하며 주간에는 운동부 학생에 대한 기능 및 실기지도를 하고 야간에는 운동기능에 관한 이론지도, 생활지도, 안전지도 등을 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지도교사에게 동계훈련기간 동안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사전에 시간외 초과근 무를 명령받고 출장까지 명령을 받아 출장비 명목(식비, 숙박비, 일비포함)으로 지불하였을 경 우 별도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초과근무 명령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 근무한 교사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 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여야 하는지? 증빙자료를 첨부하라면 무엇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여관영 수증),(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다른 명목의 일체 보상은 없음)

#### 회 시

○ 귀 질의에서 출장중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중 또는 출장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6하 원칙에 따라 작성된 설명자료로서 인정여부는 복무확인자가 판단하시기 바람.

# 평일 일과후 출장인 경우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여부

# 질 의 [55476, 2005.10.7]

- 다른 학교의 학예회를 참관하여 자료를 얻고 정보를 수집한 후 본교의 학예회를 개최하는데 도 움이 되기 위해 출장을 다녀오라는 학교장의 명을 받아 평일 일과후 저녁에 출장을 감
-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증명하기 위해 학예회와 관련된 팜플렛, 사진자료를 수 집하였음
- 위 경우 정상적인 초과근무를 신청하였으며,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고, 학교장이 공무상업무라고 판단하여 초과근무 명령에 의하여 업무수행을 하였다면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초과수당 지급여부

#### 회 시

- 국내출장 중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중 또는 출장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 근무를 한 자에게는 근무명령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공무원보수등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되어 있음.
- 상기와 같이 출장중인 해당공무원이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고,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해당기관에서 판단)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함.

### 휴무일 출장의 경우 출장비와 초과 근무비를 동시에 지급 여부

# 질 의 【53546, 2005.9.23】

○ 저는 교육청에 근무하는데 휴무일에 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학교에 출장을 갈 경우 출장비와 초 과근무비를 동시에 받을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초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것이며,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임.
- 귀하의 당해 휴일의 근무형태(출장 명령 또는 초과근무 명령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 일요일 학생 인솔 출장의 경우 출장비와 초과 근무비를 동시에 지급 여부

# 질 의 【52937, 2005.9.12】

- 일요일 학생들을 인솔하여 관내 한밭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7회 대전광역시교육감기육상대회 에 우리학교 선수들을 인솔하여 다녀옴
- 사전에 출장명령 및 초과근무명령 결재를 득하였는데 학교에서는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둘은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동시 지급 여부

### 회 시

○ 일요일육상경기대회에 학생들을 인솔하고 담당선생님이 근무지내 출장(09:00~17:00)을 내고 당해 시간을 실제 근무하였다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로 지급 가능함.

# 질 의 【61187, 2005.12.19】

- 일요일 공군참모총장배 항공대회에 시도대표로 출전한 학생들을 인솔하여 참가한 교사의 경우 출장비와는 별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주5일제로 인한 토요휴무일 날 공문에 근거하여 영재교육원 학생들과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 영한 경우 출장비 외에 초과근무수당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 회 시

○ 중앙인사위원회 예규53호에 의하여 줄장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나, 출 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로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 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는 제외되므로 확인하여 지급 하시기 바람

# 질 의 【47396, 2005.5.20】

○ 공휴일 외부행사에 학생을 인솔했을 경우...출장비외에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그리고 토요일 근무날에 외부행사(공문으로 들어온)에 학생을 인솔하여 저녁 7시까지 학생인솔과 행사를 했을경우....출장비외에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초과근무는 공문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조~제17조의2(시간외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궁금하신 초과근무는 시간외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근무시간이라 함은 국가복무규정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간) 출장중인 경우 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후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빙자료란 예를 들어 행사일정표 등을 말함>

# 질 의 [47033, 2005.5.13]

- 과학행사 학생인솔로 인하여 일요일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neis상에 개인초과근무신청이 있는데, 휴일근무신청을 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이전에 듣기로 일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초과근무 수당을 함께 받는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저희 학교는 과학교육선도학교입니다. 그래서 선도학교 계획 중에 탐구실험실 운영이 있습니다. 탐구실험실은 관내 학교 학생들 누구나 이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방학중에도 개방할 계획입니다. 방학중에 몇 명의 선생님들께서는 개인연수 기간이지만 탐구실험실 학생지도를 위하여 근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때, 근무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으실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 시

-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의 병급지급은 가능합니다
- 방학중 근무시간중 일부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은 불가합니다 이유 : 국가복무규정으로 정한 근무시간을 근무하고 그 이외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

급합니다 방학중 자가연수원을 제출하여 연수중 일부 시간을 할애하여 학교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초과근무로 보지않습니다

방학중 학생인솔 출장의 경우 출장비와 초과 근무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 는지 여부

# 질 의 【50453, 2005.7.17】

- 이번 여름방학 때 학생들 데리고 소록도 봉사활동에 3박 4일 다녀올 예정인데, 동일 지역이면 학생들 만 가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여기 제주에서 소록도를 가는 경우라 인솔이 필요한 경우이 며, 숙식도 소록도에서 함
- 이 경우 출장비와 초과근무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출장명령과 초과근무명령은 학교장의 권한이므로 학교장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 출장명령과 초과근무명령을 받아 실제로 수행한 경우 두 수당을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 만, 출장중 초과근무를 수행하였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 수학여행의 경우 출장비와 초과 근무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47810, 2005.5.30】

- 수학여행시(2박 3일간) 출장비가 지급(일비.식비.숙박비)되었을 경우에
  - 첫날 18시-24시(6시간)
  - 둘째날 00시-09시, 18시-24시(15시간)
  - 세째날 00시-09시(9시간)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초과근무명령을 받았다면 시간외수당(초과근무) 12시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특기적성수업 관련 검정시험 학생인솔 및 지도를 위해 공휴일에 초과근무(09시부터 14시까지-5 시간)하였을 경우시간외수당(초과근무) 4시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 출장중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로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학교장이 공무상업무라고 판단하여 초과근무 명령에 의하여 업무수행을 하였다면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함

### 야영중 교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 질 의 【51000, 2005.7.30】

- 교원이 초과근무신청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14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하였다면 인정되는 초과근무 시간은 4시간인지 8시간인지 궁금함
- 만약 교원의 초과근무가 8시간 인정이 된다면. 함께 야영에 참여한 행정실 직원도 8시간이 인정 이 되는지 여부

### 회 시

-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신청을 하였다고 전액보상하는 것은 아니며, 초과근무명령 내역과 실제 수행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함
-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취침시간 없이 초과근무명령과 같이 수행하였고, 정상근무시 간(09:00~17:00)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2일 각 4시간하여 8시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출장비와초과근무수당지급에관하여

# 질 의 【22726, 2003.11.29】

- 충남 서산에있는 중학교 교원이 도교육청(대전시)회의 관계로 출장을가서 오후5시에 회의가 끝 났을경우(대중교통이용하여 당일귀가가능)
- 질의1) 오후5시 이후에 대전을 출발하여 서산으로 귀가 하는경우 근 무시간 이후의 공무수행이 라하여 당일 숙박하지 않은 숙박비를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 질의2)위경우 귀가시간이 오후9시였다면 근무시간 이후인 4시간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3)공무원 여비업무처리지침(숙박비.식비의 지급제한)에 의하 면 육로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식비는 3분의1만 지급하고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출장 교원은 대전에서 오후5시에 회의를 마치고 서산으로 귀가하는 경우 육로 120키로미터가 넘고, 근무시간 이후에 공무수행중이기 때문에 숙박을 않더라도 숙박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하여 출장 교원과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바쁘

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 시

-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여비는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서, 실제 숙박하지 않았다면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에 의거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장중의 시간외근무의 경우, 근무명령에 의해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그리고 그 시간이 명백히 확인되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해외수학여행중 초과근무수당

# 질 의 【49277, 2005.6.28】

○ 올해 수학여행을 해외로 갔습니다. 물론 학생의 안전지도를 위해 밤 늦게 까지 근무. 그런데 국 내 수학여행을 인솔 했을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는데 국외수학여행이기에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행정실장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아 그 진위여부를 법 령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 시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예규53호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초과근무수당 지급지침을 참고하여 말씀드리면, 국외출장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련활동 등에 있어 초과근무 수당 지급

# <u>질</u>의 [30320, 2004.6.5]

- 수련활동 등에 있어 초과 근무에 대한 해석이 달라 질의함
- 수련회 활동, 수학여행에서 근무는 24시간 그 장소에서 교사가 이탈하지 못하며, 항상 대기 상 대로 취침하였더라도, 야간에 학생으로 인해 수시로 학생 동태 파악을 하게 됨
- 또, 야간 취침후에도 교사는 학생에개 일어나는 문제에 시급히 대처하고, 해결하며, --학생 수련 회 실무지침(2004년) 에도 씌어 있습니다. 또, 학교장은 책임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함 그렇다면
- 수련활동에서는
- 1.별도의 학교장의 초과 근무 명령이 없어도 취침후시간(0시-8시) 도 사실상의 근무 시간으로 볼

### 수 있는지

- 2. 또는 교장의 , 시간외 근무 명령이 있어 명령서에 교사가 등재하고 결재를 얻어 시행했다면, 초과 근무가 발생한 것인지
- 3. 위 초과 근무 명령( 새벽 0시-4시)은 어떤 규정이나 법령에 의해 하는 것인지
- 4. 취침시간에 초과 근무 명령을 내림이 수련회라는 특별한 상황에서도 지침이나 법령에 위반되나

#### 회 시

○ 1~4. 출장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나, 사전에 출장계획서등에 의거 근무할 것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제한적인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에 의거 확인 되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출장명령 및 초과근무의 이중명령에 대하여

# 질 의 【27624, 2004.3.30】

- 학교장의 명령을 받고 출장을 간 교사가 근무시간내에 다시 초과 근무명령을 낼 수 있는지요..
- 일요일에 출장명령을 받은 것이라면 근무시간은 몇시까지 봐야 되는 것인가요. 일요일에는 근무 시간외에는 시간외근무를 달수 있는게 아닌지요..좀 헤갈리는데요.

#### 회 시

- 근무시간내 초과근무명령은 불가함
- 일요일에도 초과근무명령권자의 명령이 있으면 시간외근무가 가능하며, 출장시간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 수학여행사전답사 초과근무관계

# 질 의 [27391, 2004.3.27]

- 학생 수학여행 사전 답사를 위해 1박2일(금,토 / 전날 13:00 ~다음날 15:00 )간의 교통비 및 숙식 비등의 출장여비를 받고 사전답사를 하였으며 토요일은 주5일제 휴업일입니다 따라서 2일간의 시간외 수당 4시간씩은 어떻게 됩니까?
-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다른명목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시간외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다른명목이란 여비항목(교통비및 숙식비,일비등)을 말하는지 아니면 여비말고 또다른 수당항목이 포함된 보상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만일에 여비만을 다른 명목으로 본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개인 생각으로는 여비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필요경비이며 초과근무수당은 근무의 연장선상의 노력의 댓가로 생각해야 되지않을까요? 수학여행 관련 질문과 답변 내용을 보면 여비와 수당은 별개 항목으로 병급이 가능하다 하여 실제로 수학여행 2박 3일 동안의 학생인솔시 필요한 부분만의 여비(대체로 일비)와 초과근무수당이 지급 되어왔는데 사전답사는 어떻게 됩니까?

### 회 시

- 다른 명목의 보상에는 여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 사전답사시 결재권자의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의거 근무사실이 명백하다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지 급이 가능하다고 봄

# 2. 초과근무의 명령 및 확인

#### 【핵심 내용 】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이지만, 사전 초과명령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받아 초과 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 사전 초과근무 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 초과수당 지급 여부

# 질 의 [61187, 2005.12.19]

○ 시험 마지막날 바쁜 일정관계로 주관식 시험답안처리와 점수를 매기는 등 성적처리하는 과정 에서 정규 근무시간을 넘겼을 경우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

즉 학생성적처리 업무로 인한 연장근무가 초과근무수당 신청 요건에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 3 시간을 넘겼을 경우 1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임.
-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시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 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하며. 학생성적처리 업무로 인한 연장근무가 초과근무수당 신청 요건에 들어가는지 여부는 명령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초과근무 사후결재

# 질 의 【49020, 2005.6.23】

○ 본교 근무하는 교사가 3월 스카웃 지도자 연수관계로 2박3일 출장을 다녀옴. 학교에서는 8만원의 연수비와 일비,교통비를 지급. 그런데 5월 중순 담당교사가 3월 연수에 대한 초과근무를 사후결재를 받겠다고 함. 연수요일이 금토일이었는데, 금요일분은 시간외로, 당시 토요일이 휴무토요일이라 휴일근무수당으로, 일요일도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요구, 스카웃 지도자 연수라 아동

인솔은 없었으며, 출장신청서나 일정표를 보면 시간외근무가 확인이 된다면, 지급을 해도 되는 지...지급을 한다면 그동안 올려져있는 초과근무 연번 문제도 곤란함.

### 회 시

- 초과근무는 명령권자에게 사전명령에 의하여 초과근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사전에 명령을 받지 못하고 초과근무를 실시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 예 규53호에 의하여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 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 근무 다음날까지 명력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3월에 실시한 초과근무를 6월에 소급하여 사후결재를 받을 수 없음
- 참고로 각종 교육훈련에 참석하기 위하여 교육비 및 교육훈련비를 지급 받은 경우 초과근무수 당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 초과근무 확인이 어려울 경우

# 질 의 [47542, 2005.5.24]

○ 운동부가 각종 대회에 출전을 많이 함에 따라 인솔교사가 늦게까지 지도를 하게되어 초과근무를 하고자 하는데, 명령은 문제가 없으나 혼자 인솔하여 가는 관계로 초과근무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임. 어떻게 확인을 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당직자 확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 회 시

-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공무원수당관한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초과근무의 확인은 복무관련 주관부서에서 초과근무 현황을 관리하고 초과근무를 한 자는 근무종료 후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자필 기재하고, 당직근무자는 매일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마감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재택 당직 등으로 초과근무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복무관련 주관부서 에서 현황을 마감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운동부 지도를 위한 경우 야외활동이 많아 초과근무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초과근무명령을 받은자가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자필 기재하고, 당직자의 확인없이 복무관련 주관부서에서 현황을 마감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함.

# 초과근무의 인정범위

질 의 [34182, 2004.8.31]

○ 교원들이 학생을 인솔하여 수련활동 등을 하였을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그렇다면 초과근무의 인정범위는 지난번 답변에서 학교장의 교육활동 등에 지장이 없는 정당한 명령에 의한다고 하였는데 1박 2일로 수련활동시 2일째 계획서에 6시 기상 일정후 18시에 하교 시켰을 경우 오전 3시간과 오후 1시간 총 4시간중 2시간 공제후 2시간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취침시간을 (학생취침시 생활지도 등을 주장)초과근무로 인정하여 4시간을 지급하는 것인지 정확한 기준을 부탁드립니다.

### 회 시

○ 초과근무는 초과근무명령에 의하여 복무담당자의 초과근무확인의 절차를 거쳐 초과근무로서 인 정이 되므로 초과근무를 명령하였다고 초과근무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까지 초과근무 수 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학생들 취침시 초과근무 확인이 되었다면 인정함이 타당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명령에 의해서 실행하였다는 추측으로는 인정함이 어렵습니다.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확인바람

# 근무지외의 다른장소에서의 초과근무수당지급여부

### 질 의

○ 방학중 체육과선생님들이 방학계획서에 훈련계획을 학교외에서 하는것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 럴경우 초과근무정액수당을 지급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럴경우 자가연수원을 내면 안되는것인 지요

### 회 시

○ 방학중에 출근근무일수 산정은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나 공무상 출장을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체육부에서 하계훈련등으로 출장을 가는 경 우는 출근근무일수에 산정할 수 있겠으나 근무지 자체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하 는 경우 출근근무일수에 산정하기 어려움(복무확인이 어려우므로)

### 근무지외의 연수장소에서의 초과근무인정관련

# 질 의 【50409, 2005.7.16】

○ 우리학교 교사의 근무지외의 연수장소에서의 초과근무인정관련 문의입니다. 연수내용은 한국스 카우트 부산연맹 2005 상급훈련 입소연수입니다. 위의 연수가 직무연수인지의 여부가 궁금하며, 그리고 선생님께 근무지외의 연수의 경우는 초과근무를 증빙할수있는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스 카우트연맹의 공문 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공문중에는 연수일정이 나와있는데 연수일정에는 아침 06:00-08:00까지는 운동,청소,세면,아침심사,점검으로 나와있습니다. 8:00부터 아침조회를 시작하는걸로 나와있고 그 이후의 시간은 각종 프로그램에 따라 연수하는걸로 나와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06:00-08:00까지의 시간도 초과근무에 해당됩다고 합니다. 이 06:00-08:00까지의 세면,식사,청소를 하는 시간도 초과근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지외의 연수장소에서 하는 세면,식사,청소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행위도 근무지가 아닌데서하면 모두 초과근무에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 시

○ 교육비를 지급받는 연수기간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3. 학교 출석수업과 출장 및 초과근무

#### 【핵심 내용 】

대학원 수강의 경우 허가를 받아 출장(연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는 공무수행 위한 출장도 아니며 자율연수의 성격이므로 교육공무원법 41조에 의한 근무지 외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하지 않음

### 대학원 출석수업 기간 초과근무 정액시간 인정 여부

# 질 의 [52455, 2005.9.5]

- 각급 학교에는 대학원 출석수업 관계로 근무상황부에 출장을 내는 교사 많음
- 방학기간이 아닌 날이 일부 포함되어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와 방학기간내 출석수업에 참석 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기간을 근무로 인정하여 초과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는 근무일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계절제나 야간제 대학원 수강의 경우 허가를 받아 출장(연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는 공무수행 위한 출장도 아니며 자율연수의 성격이므로 교육공무원법 41조에 의한 근 무지 외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하지 않음

# 대학원 수강으로 연가일수 초과(근무지 이탈)시 급여 지급방법은

### 질 의

- 고등학교 이하 국공립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은 근무시간내에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수강할수 있으며 이때 근무상황은 출장(연수)로 처리하면 됩니다(교정 07000-666,'98.7.28)
- 초중등교원의 주간대학원 복무(교원 16330-538,2001.7.20) 교원이 주간대학원 수강시 야간제,계절 제 대학원과정을 수강시 출장(연수)의 방법으로 교육활동에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출,조퇴,연가등을 활용하여 주간대학원수강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대학원수강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에 위배됨(복무 12140-79,1997.3.7)
- 교원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대학원을 수학하고 있는 중 연가일수가 초과 (근무상황부에는 출

장(연수) 결재가 되어 있음)되어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직장이탈금지)에 위배가 되었을 경우 급여 지급 방법은?

가설1) 본인의 법정연가일수를 초과하였더라도 근무상황부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였기 때문에 결근으로 볼수없어 급여는 정상지급되어야 함.

가설2) 본인의 법정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였더라도 결근 으로 보아 2/3감하여 지급하여야 함.

### 회 시

○ 교육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사항은 교원정책과(2100-6310)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공무원보수규 정제27조(결근기간의 보수감액)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상기의 사례와 같이 복무사항이 결근여부 는 해당과 및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방학중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 【핵심 내용 】

- ▶교원의 경우 방학중(평일) 학교장의 근무명령을 받아 실제로 근무를 수행한 경우(8시 간모두근무)에 한하여 출근근무일수에 산정, 초과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함, 평일의 경 우는 정규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초과근무는 인정되지 않음
- ▶방학중이라도 공휴일(일요일 등) 근무시는 정액분 지급이 아닌 초과근무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정액분과 실제 초과수당은 상호 별도 개념으로 간주)

# 방학중 초과근무 수당(정액분) 지급 기준

# 질 의 | 【51295, 2005.8.8】

○ 방학중 초과수당 지급규정에 대해 명확한 내용 정리를 바람

### 회 시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원칙은 방학중이라 하여 달라지지 않으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방학중에는 자가연수원을 제출하여 연수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자가연수를 실시하는 방학은 근무일 수로 산정하지 않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방학중 지역교육청 등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은 출근근무일수로 산정하여 초과근무정액분 을 지급할 수 있음

## 방학중 초과근무 수당(정액분) 지급 기준

# 질 의 【51551, 2005.8.16】

- 방학 중에 자가연수를 낸 교사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은 알고있는데, 궁금한 것은 연가를 1주일만 내고 방학 중에 계속 근무한 교사나 행정실 직원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수당 지급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함
- 학교에 특기적성 교육활동 및 방학중 영어캠프등 방학 동안 계속적으로 근무할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학교 특성상 연가(휴가)를 방학중에 내길 원하여 방학동안 휴가를 1주일(토,일포함)내고계속 근무한 교사나 행정실 직원에게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행정실 직원의 경우 행정직으로서 방학중에 교원과 같이 근무지 지정하여 자체연수를 할 수 없 으므로 방학중 1주일 연가(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출근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함

- 교육공무원의 경우 방학중에는 학생들의 수업이 없고 학기중 자기연찬의 시간을 갖기 어려우므로 방학중에 근무지를 지정하여 자가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방학중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학교장에게 특별 근무명령을(특기적성교육 등)을 부여받아 국가복무규정에서 규정하는 정규근무시간(09:00~17:00)을 모두 근무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산정하여 초과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행정직의 경우 방학도 상시 출근하여야 하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교육공무 원의 경우 학교장의 근무명령을 받아 실제로 근무를 수행한 경우(8시간모두근무)에 한하여 출 근근무일수에 산정, 초과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함

# 교원 방학중 초과근무수당

# 질 의 【28183, 2004.4.12】

○ 방학중 교원이 특기적성 수업 없이 저녁 6시-10시까지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학교장 명령도 저녁6시-10까지 받음) 여부

# 회 시

○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만 해당됨. 동 건은 해당이 되지 않음.

### 방학중 초과근무 수당(정액분)을 지급하기 위한 1일 근무시간

# 질 의 [50017, 2005.7.11]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 초과근무수당 정액분은 월간 출근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자에 대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의 경우 방학기간(1월,8월)중 교원의 출근 근무일 수가 15일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임
  - 이에 공무원수당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지급분을 지급하게 되어 있음
- 그런데 교원들이 방학기간중 장외연수를 신청하고 부득이 학교에 나와 공문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은 아니지만 일부의 시간을 학교에 출근하게 되는 경우와 체육교사들이 장외연수를 신청하고 선수지도를 하기 위하여 학교에 출근하는 경우 공무원수당 규정(초과근무수당)등에는 명확한 지침이 없어 일선 학교에서는 초과근무처리가 혼란스러워 질의

○ 상기의 질의사례의 경우가 초과근무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만약 초과근무로 인정된다면 초과근 무수당 지급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

### 회 시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무일수 산정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8 시간(점심시간 제외)을 모두 근무하여야 함
- 따라서 공문서 처리 등을 위하여 일부 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 일수에 산정할 수 없으며, 방학이 아닌 경우인 학기중에도 조퇴 등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8시 간이 되지 않은 경우 출근근무일수에 산정할 수 없음을 참고로 알려드림

# 방학중 초과근무 수당(정액분)을 지급하기 위한 1일 근무시간

# 질 의 【48591, 2005.6.15】

○ 방학중에 08:00에 출근하여 90분간 특기적성교육(수당지급) 수업을 진행하고, 그 시간이후 정규 근무를 한후 학생들의 자율학습지도를 위하여 16:00~ 22:00까지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 교사들 의 시간외 근무 정액분과 그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중앙인사위원회예규53호에 의하여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 간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 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지급 분을 지급 가능함
- 정액지급분이 지급된 날에 특기적성등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외에 초과근무 명령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행하였을 경우, 초과분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 의 경우, 오전9시30분 ~ 오후4시까지 교장선생님께 특별한 근무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정액분 지급일에 포함할 수 있음

### 방학중 일요일 포함 출장시 초과근무 수당 지급

# 질 의 [41762, 2005.2.14]

- 방학중 체육선생님이 운동부학생들과 10일 동안(일요일포함) 전지훈련을 감. 출장비는 당연히 지급됨
- 정액분은 일요일포함인가요 아닌 걸로 알고있는데, 정액분외 초과분 수당도 지급이 가능한 지여부 15일(정액분)을 넘어야 초과분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음...

### 회 시

- 일요일에 실제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도 정액분 지급이 아닌 초과근무분으로 계산하여 지급 하여야 하며
- 학생인솔 및 훈련 지도가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 질 경우 학교장의 사전 시간외근무 명령에 따라 근무하였다면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다른 명목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동 수당은 지급 할 수 없음
- 그리고, 정액분과 실제 초과수당은 상호 별도의 개념으로 간주 처리됨

### 방학중 교육과정 워크샵 실시한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

# 질 의 【41409, 2005.2.5】

○ 방학기간중 교사가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워크샵을 1박2일로 실시한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생생활지도도 아닌데 교육과정워크샵을 퇴근시 간 이후에 한것도 아닌데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 회 시

○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워크샵을 실시한 경우 정규 근무시간(8시간)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정액 분 지급일수에 포함하면 됨.

#### 방학중 초과근무 확인 서식

# 질 의 [41099, 2005.1.31]

○ 남천중학교 행정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학중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코자 함에 근무를 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지급할지 정확한 답변요구함. 저희 학교서식은 날짜,내교교사명,업무 내용,시간이 들어 있는 서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중 일찍 교사의 초과수당을 지급 키위하여 방학계획서도 함께 참고로 하구요 방학중 내교 교사의 시간이 하루가 되지 않아도 지 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회 시

○ 방학중에 근무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특정서식은 없음. 다만,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53호에 의하여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지급분을 지급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서식이 학교장의 결재가 되었다면 명령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근거로 근무시간을 산정할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자체 내규에 의한 탄력근무제)에서 정한 근무시간은 정확히 지켜져야 함.

### 방학중 특기적성 교육과 초과근무수당

### 질 의

[50112, 2005.7.12]

- 방학중 초과근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교사의 경우 정규근무시간:09:00-17:00까지임
- ○○교사가 방학중에 08:00-13:10분까지 특기적성근무를 한 후(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음) 13:10-22:00까지 자율학습감독을 학교장의 명을 받아 근무한 경우
- 1.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은 지급할수 있는지 여부(그날의 시간외 수당인정)
- 2.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을 지급할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한다면 몇시간 지급하여야 하는지...

### 회 시

- 우리부 홈페이지 질의응답사례의 "특기적성관련 초과근무 적용사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 다
- 1. 워칙
- 가. 정규근무시간중에 이루어지는 특기적성교육은 정규근무로 보아, 특기적성교육 후 근무명령에 의한 자율학습지도 등으로 정규근무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및 실적분의 지급이 가능함.
- 나. 정규근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특기적성교육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의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 지급시간수에서 제외됨.
- 2. 사례(교원의 정규근무시간이 09:00 17:00까지일 경우를 상정)
- 가. 09:00 13:00 특기적성교육
- 13:00 17:00 근무명령에 의한 자율학습지도 등
- 17:00 22:00 근무명령에 의한 자율학습지도 등
- : 이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및 실적분의 지급이 가능함.
- 나. 09:00 17:00 정규수업
- 17:00 18:00 특기적성교육
- 18:00 22:00 근무명령에 의한 자율학습지도 등

: 이 경우 특기적성교육 1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 지급시간수계산시 제외됨. 따라서 18:00 -22:00까지의 근무시간 중 시간외근무수당지급시간수 계산의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2시간을 공제한 2시간분의 근무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함.

상기 사례는 "가"의 경우로 판단됩니다 초과근무시간은 평상시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 방학중 초과근무 정액분에 대해서

# 질 의 [32898, 2004.7.28]

○ 우리학교는 7월 15일 종업식을 했습니다. 7월 출근일수는 13일인데요.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3-6학년 청소년단원중 희망하는 학생을 인솔하여 심신수련을 다녀왔습니다. 방학중 자격연수나 직무연수인 경우에는 초과근무 정액분으로 산정하는게 맞는데, 그리고 2박 3일로 갔다 오셨다고 3일간 초과근무명령도 작성 하셨구요. 이 경우 정액분도 인정이 되고 초과근무도 인정이 되는 건지? 초과근무만 인정이 되는 건지? 아님 둘 다 인정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회 시

- 아동인솔 인성수련으로 초과근무를 17:00~24:00, 다음날 00:00~09:00까지 하였다면 (취침시간까지 초과근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취침시간 제외)각각 4시간 가능합니다 단, 다음날의 경우 정 상근무를하여 정액분을 받는 평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 인정가능합니다.(조퇴, 연가, 외출 등등 정상근무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심신수련 활동이 공무인지의 여부를 가리어 공무라면 근무일과 초과근무가 인정되나 그렇지 않 은 경우는 근무일과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음.

# 5. 주 5일제 근무와 초과근무수당

#### 【핵심 내용 】

- ▶ 휴무토요일 근무자(토요민원상황실 근무요원 포함)의 시간외근무
  - ·주5일근무제 관련 휴무토요일 근무자(토요민원상황실 근무요원 포함)의 시간외근무시 간은 휴일근무에 준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한다.
    - (예) 1일 2시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 토요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09:00-13:00 초과 인정함

### 토요휴무제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 질 의 [49393, 2005.6.30]

○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은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토록 하여 매주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의 경우 2007년부터 동 근무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다른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휴무를 하는 때에도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2006년까지는 학생 수업을 위하여 토요일도 근무를 하게 되는바, 근무를 하는 토요일에 휴일근무 또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학교에서는 토요휴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토요일에 근무하였다고, 휴일근무에 준하는 시간외 근무시간을 지급하기 어려움

#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초과근무발생에 대한 보상방안 질의

# 질 의 [44642, 2005.4.3]

- 저희 학교는 일과시간이 8시 10분 출근 4시 10분 퇴근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 5일제 수업에 따라 토요일 하루 쉬기 위해 주중 수업시간을 늘이다 보니 토요휴업이 든 주는 기존 주 2회 7 교시 수업이던 것이 늘어 주 월요일일주일 내내 7교시가 끝나는 시간인 4시 10분에 학생들 수업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4시 10분이니 담임의 경우 종례 및 청소지도를 해야하므로 7교시가 들은 날은 상시적으로 초과근무가 발생합니다.
  - 기존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묵묵히 감수해 왔으나 이제 토요휴업이 든 주는 일주일 내내 초과 근무가 발생하여 더욱 힘겨워졌습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과정의 조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우선 임시

적인 조치로 몇 가지 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1안: 발생되는 초과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현재 규정으로 불가능하다 면 개정 계획이 혹시 있는지

2안: 1안이 당분간 불가능하다면 수업이 6교시에 끝나는 주에는 퇴근시간을 앞당겨 퇴근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단위학교별 자율출퇴근제를 확대 시행하든지

(기존 공무원복무규정에 휴일근무시 다음 주에 하루 휴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준용하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3안: 1, 2안이 준비와 시행에 시간이 걸린다면 수업이 6교시에 끝나는 두 주간의 6일 동안에는 현재 일부 학교에서 단위 학교장 재량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호인모임의 형식으로 소정 시간 이후에 외부 활동을 포함한 동호인 모임을 폭넓게 운영하도록 할 수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 회 시

○ 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중 초과근무수당 지급 규정에 의하면 1일 2시간 이상 초과근무하였을 경우에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업무특성상 정시에 출・퇴근하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 행정력 낭비등의 사유로 2시간미만의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초과근무 절차와 관련없이 매월 15시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5일제 수업에 따른수업시간 조정으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관련 규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 주40시간근무에 관련하여 초과근무수당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질 의 【55570, 2005.10.9】

- 소규모학교의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입니다. 2005.7.1.부터 시행된 주40시간근무제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는 주중에 순번제로 4시간씩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행정실근무자가 2명으로 1명이 일주일간 교육참가등으로 부재시혹은 업무가 바쁜경우 대체휴무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 경우 토요일 근무시간 4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초과근무수당지급이 가능하다면 휴무토요일로 보아 4시간보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2시간분을 공제한 2시간분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회 시

○ 주 40시간의 초과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나,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근무는 공무원초과근무지침에 의거 2시간을 공제하여야 함

# 6. 교원연수와 초과근무 수당

#### 【핵심 내용 】

▶ 방학중에 국가공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ex. 1자격연수 등)하는 경우는 근무일수에 포함되나, 자율연수 및 자가연수등은 자기연찬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무수행이라고 보기어렵우므로 출근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음(초과근무수당지급안됨)

# 방학중 교원의 연수와 초과근무수당 지급

# 질 의 【50145, 2005.7.12】

- 교원의 방학중 자율연수시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
- 자가연수시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나 자율연수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의견이 분분함

### 회 시

○ 방학중에 국가공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ex. 1자격연수 등)하는 경우는 근무일수에 포함되나, 자율연수 및 자가연수등은 자기연찬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우므로 출근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음(초과근무수당지급안됨)

### 교원의 교육연수비와 초과근무수당

# 질 의 【48683, 2005.6.16】

- 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 보이스카웃 관계로 담당 선생님만 참석하는 교육연수가 3월 에 있어서, 연수에 따른 출장비(여비)를 드렸습니다.
  - 그러나, 선생님께서 연수일정이 09:00-24:00까지 받는 연수기 때문에 초과근무에 해당되어 초과 근무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 교육훈련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고 교육비를 지급 받은 경우 초과근무는 인정되지 않음

# 퇴근후 직무연수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 질 의 [29452, 2004.5.19]

○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10일간 퇴근후(18시-21시)에 직무연수(연수명 : 과목별 ICT활용 강사요원 연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기록하고 연수에 참여하는데 처음 5일은 초과 근무에 해당된다고 하여 기록을 하였는데 지금은 해당이 없다고 하여 기록도 못하고 지금까지 기록한 초과근무도 무효에 해당된다는 학교측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퇴근후의 교육청주관의 직무연수가 초과근무수당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시

- 일반적으로 1개월 미만의 교육훈련(직무연수) 파견시는 정액급은 지급되고, 실적급은 인정되지 않음.
- 동 직무연수의 경우, 교육청 계획에 의거 근무시간 종료후 직무연수를 실시 한다면 연수시간인 3시간중 2시간을 공제한 1시간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며,
- 확인방법은 교육청 연수 차출 공문과 연수기관의 등록부, 차출기관에서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해당학교에 송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직무연수와 관련 초과근무수당에 관해

# 질 의 [35398, 2004.10.1]

○ 교사가 방학중 자율연수를 필요에 의해 받았습니다. 연수기관은 서울시 교육청 지정 직무연수 기관(45시간 이상)이며 전국단위연수 기관입니다. 교육청에서 학점(3학점)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정식 출장명령을 받고 연수를 이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실에서는 출장은 인정되나(출장비는 지급 인정안됨) 근무 일수에는 산입이 안된다며 정액 초과근무수당(15일 이상 근무)에서 제외시키며 차감액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무가 인정되는 기관은 교육청에서 필요(자격연수,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국비연수)에 의한 연수만 인정된다는 교육부의 해석이 있었다고합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함양 운운하며 교원의 자율(비)연수를 권장하면서 이러한이율배반적인 해석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 뿐입니다. 이러한 해석에 정확한 유권해석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 회 시

○ 답변 현재 방학중 자율연수에 대한 근무일수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방안 강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 직무연수시 초과근무수당

# 질 의 [34626, 2004.9.8]

○ 직무연수시 초과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는걸로 아는데요 연수시간표를 보면 15시, 16시에 마치는 것이 많습니다. (방학중 연수도 학교의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17:00까지 정액분을 준다면) 이경우는 학교의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정액분을 주지 말아야 하는지? 근무상황부의 출장에는 17:00로 되어 있구여. 연수시간표에는 15시,16시라고 한다면 정액분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 회 시

○ 전일제 연수의 경우 타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맞춰 인정하고 있습니다

## 교원의 방학중 자율연수시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하여

# 질 의 [33967, 2004.8.27]

○ 경남창원 남산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전차순입니다 교원의 방학중 자율연수시 초과근무수 당 지급 여부문의 드립니다 정식 출장(자격연수등)은 지급하여야하나 개인적으로 자율연수나, 교육감지정 특수분야 직무연수(자율연수)시 초과근무에 대한 지급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교육감지정 특수분야 직무연수는 30시간이상은 30,000원, 60시간이상은 60,000원 정도 경비보조를 합니다. 답변주시면 주위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회 시

○ 현재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출장비를 지급받는 연수에 대하여는 출근근무일수로 인정하고 있고,
 기타 자율연수등은 출근근무일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출장명령을 받았거나⇒연수출장으로 간주, 경비보조를 받는 경우포함) 현재 자율연수에 대한 복무상황을 검토중입니다

# 7. 비정규직관련 초과근무수당

학교 비정규직 초과 근무수당, 특별근무 수당 지급

# 질 의 [46069, 2005.4.27]

- 저는 경남에 있는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 보조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정서,지체, 청각의 장애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희 특수 보조원들은 주로 정서부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 구요 정서장애의 아이들은 제가 보기에도 담임혼자서는 힘이 들어 보여 저희 보조원들은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 이번 수련회때도 1박 2일동안 아이들 옆에서 잠도 제대로 못자면서 까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수당이 나오는데 저희 들은 수당이 나오지 않 는다고 하는데, 저희 계약서에는 분명 특별근무 와 초과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되 어 있는데 왜 수당을 받을수가 없는지, 그냥 봉사했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억울한 면이 없잖아서 글을 올립니다.

### 회 시

○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지침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만 계약 서상의 세부사항은 학교나 교육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특별근무와 초과근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계약당사자인 해당학교장과 수당에 대하여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기간제교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

#### 질 의

○ 12월 24일 (넷째주토요일)에 방학식을 실시하는 학교입니다. 정규직 교원들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이 12월 24일까지로 계약되었는데, 토요휴뮤일 근무하게되는 기간제교원도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질문 1. 신청하였다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질문 2. 한시적으로 계약이 된 자로 당초 계약서에 근무기간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초과근무수당 은 발생하지 않는다.

#### 회 시

○ 학교장이 기간제교사로 하여금 휴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것을 명령하였다면, 그것은 계약서에 정한 근무조건 외에 별도의 근무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8. 기타

개교기념일,효도방학 등 임시휴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수당정액분과 초과분지급 가능 여부

### 질 의

○ 토요휴무나 공휴일의 경우에는 2시간공제없이 하루4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외 개교기념일이나 효도방학과 같은 임시휴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시간외정액분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시간외초과분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지급한다면 공휴일에 준하여 2시간공제없이 지급을하는지, 아님 평일과 같이 2시간 공제후 지급하는지

### 회 시

○ 국가에서 지정한 휴무일 이외의 효도방학 등은 평일근무와 같이 산정하시기 바람

# 육아시간사용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2005.3

# 질 의 [42157, 2005.2.20]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4항에 의거 육아시간 사용대상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육아시간을 매일 1시간씩 사용했을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때에 1주일에 6시간을 공제해야 하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해야하는 지 여부

#### 회 시

○ 일반대상자의 경우 육아시간을 1시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분(15시간)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이 가능함.